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6회 임시회(2020. 3.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국 모

목 차

I. 제안 개요 -----	1
II. 세입·세출 예산 총괄 -----	2
1. 총괄 현황	
2. 재원 (세입)	
3. 세출 예산	
III. 일반회계 -----	3
1. 총괄 현황	
2. 세입 예산	
3. 세출 예산	4
-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 편성현황 및 검토 의견	6
IV. 검토의견(종합) -----	17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제안 개요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2. 28.(금) 마포구청장

-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0. 3. 2.(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020. 3. 2.(월)

- 위원회 회부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2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II 세입·세출 예산 총괄

1 총괄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비 고
합 계	695,506,568	691,365,304	4,141,264	0.60%
일반회계	614,665,809	610,524,545	4,141,264	0.68%
특별회계	80,840,759	80,840,759	0	0%
의료급여	480,690	480,690	0	0%
마포농수산물	7,566,726	7,566,726	0	0%
주차장	64,753,027	64,753,027	0	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6,996,191	6,996,191	0	0%
관광사업	544,125	544,125	0	0%
건축안전	500,000	500,000	0	0%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억 4,126만 4천 원(0.60%)이 증가한 6,955억 656만 8천 원임.

- ▶ 일반회계: 6,146억 6,580만 9천 원(41억 4,126만 4천 원 증가)
- ▶ 특별회계: 808억 4,075만 9천 원(변동 없음)

2 재원 (세입)

(단위: 천 원)

구 분	소 계	보조금			보전수입 등	
		계	국고 보조금등	시·도비 보조금등	계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141,264	103,275	61,990	41,285	4,037,989	4,037,989
일반회계	4,141,264	103,275	61,990	41,285	4,037,989	4,037,989

○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총 41억 4,126만 4천 원으로 재원 대부분이 일반회계로 세부 내역은

- ▶ 국·시비보조금: 1억 327만 5천 원
- ▶ 순세계잉여금: 40억 3,798만 9천 원

3 세출 예산

(단위: 천 원)

합 계	자체사업	보조사업	비고
4,141,264	4,017,284	123,980	

- 일반회계 세출편성: 41억 4,126만 4천 원
 - ▶ 추가 인건비 등 자체사업: 40억 1,728만 4천 원
 - ▶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1억 2,398만 원
- 특별회계 세출편성: **해당 없음**

III 일반회계

1 총괄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률
일 반 회 계	614,665,809	610,524,545	4,141,264	0.68%

-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6,146억 6,58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6,105억 2,454만 5천 원 대비 0.68%인 41억 4,126만 4천 원 증가함

2 세입 예산

(단위: 천 원)

구 분	소 계	보조금			보전수입 등	
		계	국고 보조금등	시·도비 보조금등	계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141,264	103,275	61,990	41,285	4,037,989	4,037,989
일 반 회 계	4,141,264	103,275	61,990	41,285	4,037,989	4,037,989

- 세입편성
 - ▶ 국·시비보조금: 1억 327만 5천 원
 - ▶ 순세계잉여금: 40억 3,798만 9천 원

3 세출 예산

(단위: 천 원)

합 계	자체사업	보조사업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4,141,264	4,017,284	123,980	61,990	41,285	20,705	

○ 세출편성

- ▶ 추가 인건비 등 자체사업: 40억 1,728만 4천 원
- ▶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1억 2,398만 원

(1) 국별 세출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614,665,809	100%	610,524,545	100%	4,141,264	0.68%
감 사 담 당 관	160,067	0.03%	160,067	0.03%	0	0%
마포1번가연구단	915,418	0.15%	915,418	0.15%	0	0%
행 정 관 리 국	176,081,706	28.65%	174,913,423	28.65%	1,168,283	0.67%
기 획 재 정 국	9,445,749	1.54%	9,445,749	1.55%	0	0%
관 광 일 자 리 국	32,282,713	5.25%	30,877,726	5.06%	1,404,987	4.55%
복 지 교 육 국	340,173,889	55.34%	338,686,240	55.47%	1,487,649	0.44%
도 시 환 경 국	18,095,705	2.94%	18,072,528	2.96%	23,177	0.13%
교 통 건 설 국	15,377,837	2.50%	15,377,837	2.52%	0	0%
보 건 소	18,248,732	2.97%	18,191,564	2.98%	57,168	0.31%
구 의 회	3,883,993	0.63%	3,883,993	0.64%	0	0%

(2) 성질별 세출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614,665,809	100%	610,524,545	100%	4,141,264	0.68%
인 건 비	160,740,292	17.37%	106,358,378	17.42%	381,914	0.36%
물 건 비	44,973,702	7.32%	43,669,434	7.15%	1,304,268	2.99%
경 상 이 전	415,589,853	67.61%	413,253,771	67.69%	2,336,082	0.57%
자 본 지 출	38,904,765	6.33%	38,805,765	6.36%	99,000	0.26%
내 부 거 래	3,147,164	0.51%	3,127,164	0.51%	20,000	0.64%
예비비및기타	5,310,033	0.86%	5,310,033	0.87%	0	0%

(3) 분야별 세출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614,665,809	100%	610,524,545	100%	4,141,264	0.68%
일반공공행정	25,571,867	4.16%	24,403,584	4.00%	1,168,283	4.79%
공공질서및안전	4,151,626	0.68%	4,151,626	0.68%	0	0%
교육	11,265,706	1.83%	11,192,266	1.83%	73,440	0.66%
문화및관광	29,949,877	4.87%	29,139,732	4.77%	810,145	2.78%
환경	37,477,124	6.10%	37,477,124	6.14%	0	0%
사회복지	333,402,639	54.24%	331,583,588	54.31%	1,819,051	0.55%
보건	15,606,684	2.54%	15,549,516	2.55%	57,168	0.37%
농림해양수산	933,720	0.15%	933,720	0.15%	0	0%
산업·중소기업	2,666,048	0.43%	2,476,048	0.41%	190,000	7.67%
교통및물류	7,629,242	1.24%	7,629,242	1.25%	0	0%
국토및지역개발	13,848,588	2.25%	13,825,411	2.26%	23,177	0.17%
예비비	5,310,033	0.86%	5,310,033	0.87%	0	0%
기타	126,852,655	20.64%	126,852,655	20.78%	0	0%

(4)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 현황

총 무 과

○ 추정 편성액은 11억 4,704만 3천 원 임.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현황			비고
	예산액(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합 계	1,321,043	174,000	1,147,043	
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 추가 당직 인원 일·숙직수당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원근무로 인한 일·숙직 당직비 ▶ 60,000원 × 383명	196,980	174,000	22,980	증액
청사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직원 근태 확인 인식기(홍채 및 안면인식기) 교체 ▶ 2,200,000원 × 25대	55,000	0	55,000	순증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무관리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물품 등 구매 ▶ 마스크: 3,000원 × 217,327장 ▶ 손소독제: 5,000원 × 14,881개 ▶ 기타물품(방호복 등): 298,677,000원	1,025,063	0	1,025,063	순증
코로나19 확산 방지 (자산및물품취득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열화상 카메라 구입 ▶ 4,000,000원 × 11대	44,000	0	44,000	순증

○ 검토의견

-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증원되는 당직인원의 일·숙직비의 추가 소요분을 계상하고, 직원 근태 확인을 위한 인식기의 교체와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임.

-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보이나, 방호보호복 구매비는 세부 내역서를 확인 후 조정하여야 한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었음.
- 직원 근태 확인을 위한 인식기의 교체사업은 ID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인식 시스템 사례를 고려하여 사업 시행시 효과성 대비 문제점은 없는 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교체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인식기 설치장소를 층별 분산시키는 등 직원 편익증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열화상 카메라의 구입은 감염자의 조기 발견과 공공기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식별 능력의 저하로 인한 사업 효과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카메라 관리의 문제가 대두되어 구매 대수를 줄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임.

자 치 행 정 과

○ 추정 편성액은 2,124만 원 임.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 산 현 황			비고
	예산액(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합 계	21,240	0	21,240	
동행정지원 (사무관리비) - 코로나19 대응 청사 소독 방역 ▶ 190,000원 × 16개동 × 6회	18,240	0	18,240	순증
동행정지원 (사무관리비) - 코로나19 홍보물(현수막) 제작	3,000	0	3,000	순증

○ 검토의견

- 자치행정과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16개 동 청사 방역과 전염 예방수칙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음.

일 자리 지원 과

○ 추정 편성액은 4억 484만 2천 원 인.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 산 현 황			비고
	예산액(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합 계	404,842	0	404,842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에 인력(17명) 파견	381,914	0	381,914	순증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사무관리비) -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지역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도시락 day 추진 ▶ 8,000원 × 1,433명 × 2회	22,928	0	22,928	순증

○ 검토의견

- 지역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업 등에 지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마포형 뉴딜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81,194천 원을 계상하였는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현 사태에 직접적이지 않은 사업이므로 다음 추경에 반영하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음.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도시락 day’ 비용 22,928 천 원이 편성되었는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비상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전 구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가격리자, 확진자, 일상 생활에 취약한 장애가구, 대면접촉을 꺼려 복지 서비스가 소홀할 수

있는 독거노인 등에게도 본 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각 호 제2호에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를 명시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 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1의2.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문화예술과

○ 추정 편성액은 8억 1,014만 5천 원 임.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현황			비고
	예산액(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합 계	7,325,430	6,515,285	810,145	
마포문화원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문화원 직원 복리후생비 및 운영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에 따른 손실금액 보전	106,800	94,200	12,600	증액
(재)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 마포문화재단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에 따른 손실금액 보전	7,218,630	6,421,085	797,545	증액

○ 검토의견

- 날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각종 프로그램의 휴관, 공연 중단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마포문화원과 (재)마포문화재단의 운영비를 각각 12,600천 원, 797,54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이는 상기 기관의 기본적 운영을 위한 소요금액으로 판단되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다만, 두 기관의 손실금 발생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따른 것이긴 하나 그만큼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향후 두 기관 운영의 정상화와 이에 따른 수입 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지역 경제 과

○ 추경 편성액은 1억 9천만 원 인.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 산 현 황			비고
	예산액(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합 계	320,000	130,000	190,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경제활동 지원금 ※ 마케팅 활동 지원 확대	100,000	30,000	70,000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공공운영비) - 지역화폐발행 부담금 지출 ※ 마포사랑상품권 추가발행(50억 원)에 따른 할인보전금(2%)	200,000	100,000	100,000	증액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 보전금	20,000	0	20,000	순증

○ 검토의견

- 전염병의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및 경제활동 지원금 70,000천 원, 마포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 보전금 100,000천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를 기존 1.5%에서 1%로 인하함에 따른 이자 보전금 20,000천 원을 각각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음.
-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는 동의하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기존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또한, 감염자가 늘고 이번 위기가 장기적일 경우를 대비하여 기존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몰락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행업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임.

< 참고 자료 >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2020.2.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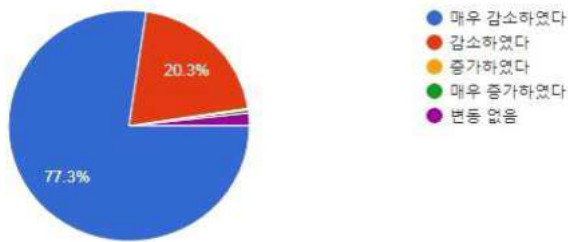
- 소상공인연합회 -

□ 매출액 변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주 대비(2/4~2/10 기준) 사업장 매출액 변화를 묻는 물음에 ‘매우 감소하였다’가 77.3%(827명), ‘감소하였다’가 20.3%(217명)로 97.6%가 ‘매우감소하거나 감소하였다’라고 조사됨.

매우 감소하였다	감소하였다	증가하였다	매우 증가하였다	변동없음
827(77.3%)	217(20.3%)	2(0.2%)	5(0.5%)	19(1.8%)

[표 1-6] 매출액 변화(%) (총: 1,0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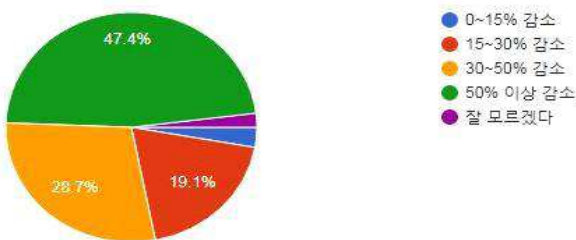


[그림 1-1] 매출액 변화(%) (총: 1,070명)

□ 매출액 감소 비율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주 대비(2/4~2/10 기준) 사업장 매출액 감소 비율을 묻는 물음에 ‘50% 이상 감소’가 47.4%(506명)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30~50% 감소’가 28.7%(306명)로 조사됨.

0~15% 감소	15~30%감소	30~50% 감소	50% 이상 감소	잘 모르겠다
30(2.8%)	204(19.1%)	306(28.7%)	506(47.4%)	21(2%)



[그림 1-2] 매출액 감소 비율(%) (총: 1,067명)

복지정책과

○ 추경 편성액은 1억 2,398만 원 임 [매칭사업].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현황			비고
	예산액(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합 계	123,980	0	123,980	
생활지원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코로나19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비	123,980 [국] 61,990 [시] 41,285 [구] 20,705	0	123,980 [국] 61,990 [시] 41,285 [구] 20,705	순증

○ 검토의견

- 복지정책과의 추경 예산 123,980천 원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임.

노인장애인과

○ 추경 편성액은 12억 9,022만 9천 원 임.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현황			비고
	예산액(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합 계	12,348,514	11,058,285	1,290,22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기타보상금) - 구직영사업 활동비 및 부대경비 ※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편성)	2,721,040 [국] 816,312 [시] 952,364 [구] 952,364	2,466,338 [국] 816,312 [시] 952,364 [구] 697,662	254,702 [국] 0 [시] 0 [구] 254,702	증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회복지사업보조)	9,627,474	8,591,947	1,035,527	증액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국] 2,888,242	[국] 2,888,242	[국] 0	
※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	[시] 3,369,616	[시] 3,369,616	[시] 0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편성)	[국] 3,369,616	[국] 2,334,089	[국] 1,035,527	

○ 검토의견

-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은 보건 재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민생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구비 기타보상금 254,702천 원과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1,035,527천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국·시비의 확정내시에 따른 것임.

교육 지원 과

○ 추경 편성액은 7,344만 원 임.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 산 현 황			비고
	예산액(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합 계	73,440	0	73,440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 중국입국 유학생 방역물품 지원 ▶ 방역소독(용역): 300,000원 × 2개소 × 4회 ▶ 마스크: 3,000원 × 600명 × 14일 × 2매 ▶ 손세정제: 5,000원 × 1,400개 ▶ 소독물품: 44,000원 × 60개 ▶ 체온계: 100,000원 × 100개 ▶ 장갑 등 소모품	73,440	0	73,440	순증

○ 검토의견

- 3월 개강을 앞두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구매비로 73,440천 원을 편성하였는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지역 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이들을 위한 마스크, 소독제, 기숙사 방역을 위해 예비비 42억 원이 지출될 예정이고, 교육부와 서울시에서는 ‘중국입국유학생 공동대응단’을 구성하여 중국 유학생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목적으로 자치구별 특별 교부금 142,702 천 원이 교부되었으므로 국·시비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주 택 과

○ 추정 편성액은 2,317만 7천 원 임.

(단위: 천 원)

사 업 명	예 산 현 황			비고
	예산액(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합 계	23,177	0	23,177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수막 제작 (공동주택 배부용) ▶ 77,000원 × 301개	23,177	0	23,177	순증

○ 검토의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23,177천 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공동주택 내 감염 예방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사료되나, 사업대상에 일반주택지는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방송, SNS 등 여러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현수막을 통한 홍보방법이 효과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 시 관내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에게 우선 발주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의 공정한 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건 행정과

○ 추정 편성액은 5,716만 8천 원 임.

(단위: 천 원)

사업명	예산현황			비고
	예산액(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합 계	102,088	44,920	57,168	
방역소독 (공공운영비) - 새마을자율방역대 장비 유류비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마을 자율방역대 장비 유류비 ▶ 2,000원 × 380ℓ × 16반	12,160	6,720	5,440	증액
방역소독 (재료비) - 방역소독용 약품구입비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마을 자율방역대 장비 약품구입비 ▶ 살균제: 10,000원 × 1,100ℓ ▶ 살충제: 30,000원 × 300ℓ ▶ 유충구제제: 30,000원 × 300ℓ	29,000	19,000	10,000	증액
방역소독 (행사실비지원금) - 새마을자율방역대활동비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마을 자율 방역대 활동비(목욕비 등) ▶ 119,000원 × 16반 × 32회	60,928	19,200	41,728	증액

○ 검토의견

- 현재 코로나19 감염 비상사태를 맞아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새마을 자율 방역대의 유류비, 약품 구입비, 기타 활동비 등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서울시 감염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그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활동 횟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임. 다만 세부 항목별 물품 소요량 및 산출단가의 적정성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IV 검토 의견(종합)

-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기 위해 제출되는 것으로,
- 지난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맞아, 날로 증가하는 국내 감염 확산을 저지하고 전염에 따른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 다만, 부서별 세부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내용이 본 추경 편성과의 연관성은 담보하고 있는지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고 재난 극복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마포문화원과 (재)마포문화재단 운영비 손실분 보전 등을 포함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 비용이 지출됨은 물론,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올 해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비 지출 확대가

예견되는 만큼 이러한 세출 증대에 따른 세입 확보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구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